문서번호	기계1사업소-10125
등록일자	2019.11.22.
결재일자	2019.11.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사원	부장	P/L(파트장)	소장
권찬우	나종순	이홍로	11/22 김희문
협조			

「지하철 1~4호선 소방설비」 법정점검 용역 발주 방안 보고

2019.11.

기계1사업소

「지하철 1~4호선 소방설비」

법정점검 용역 발주 방안 보고

□ 소방법에 의거 시행중인 『1~4호선 소방설비 법정점검 용역』 건이 당해 연도 12.31. 계약기간 완료 예정으로 내년도 용역분에 대하여,

□ 예산편성 이후 발주 시에는 일정기간 행정 소요일수 발생으로 적기에 법정점검 시행이 어려움에 따라, 적기에 점검 미 시행에 따른 불이익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 법정점검 용역 대가를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하여 민원발생 우려를 해소코자 함.

Ⅰ 관련근거

- 기계1사업소-28624(2018.12.14.) 『1~4호선 소방설비 법정점검 용역 시행』
- 지방계약법 제23조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등)
-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Ⅱ 현 황

❑ 법정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현황

구 분	법정점검 대상
1~4호선 소방설비 법정점검 용역	1~4호선 120개역과 5개 차량기지, 2개 일반건축물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 1~3월 시행하는 법정점검 대상역 현황

구 분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1월	-	서울역(1), 종각, 종로3가(1), 지축, 지축차량기지, 구파발, 연신내, 불광, 녹번, 홍제, 무악재, 독립문 (12역)
2월	신정네거리, 가락시장, 경찰병원, 오금 (4역)	종로5가, 동대문(1), 동묘앞, 제기동, 신설동(1), 청량리, 군자차량기지, 경복궁, 안국, 종로3가(3), 금호, 옥수, 혜화, 동대문(4), 동대문역사문화공원(4) (15역)
3월	진로종합유통명산품상가 (1개소)	동대문역사문화공원(2), 뚝섬, 상왕십리, 왕십리, 신당, 용두, 용답, 을지로입구, 을지로3가(2), 을지로4가, 한양대, 서울역(4), 숙대입구, 삼각지, 신용산, 이촌, 동작, 총신대입구, 사당(4) (19역)

Ⅲ 현 실태(문제점)

❑ 소방설비 법정점검은 소방법으로 시행 시기가 지정되어 있으며, 해당 용역 계약기간이 당해 연도 12.31일 만료될 예정이나,

❑ 2020년 예산편성 이후 발주 시 일정기간(약 3개월) 행정 소요일수 발생으로 법적 지정된 기간 내 점검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지정된 시기에 법정점검 미 시행시 벌칙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벌칙) 4.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아니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소방설비 법정점검은 관련법에 의거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로 산정되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예산 부족으로 보조 기술인력 노임을 제조노임으로 적용하고 있어, 현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④ 제1항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점검하게 하는 경우의 점검 대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의 기준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에 의거하여 소방설비 법정점검 용역의 설계는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으로 산정함

※ 유관기관 법정점검 용역 노임적용 실태

기관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적용노임	엔지니어링 특급1명 제조노임 2명	엔지니어링 특급1명 엔지니어링 중급1명 엔지니어링 초급1명	엔지니어링 고급1명 엔지니어링 초급2명
기관	대전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적용노임	엔지니어링 특급1명 엔지니어링 초급2명	엔지니어링 특급1명 엔지니어링 중급1명 엔지니어링 초급1명	엔지니어링 특급1명 엔지니어링 중급1명 엔지니어링 초급1명

Ⅳ 개선 대책

❑ 연초 소방설비 법정점검 미 실시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으로 발주

○ 계약기간: 당해 연도 1.1.~12.31.(12개월)

※ 지방계약법 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

○ 시행시기: 2020년도 용역부터 시행

❑ 소방설비 법정점검 용역 노임을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하여, 민원발생 우려 해소

○ 법정점검 적용 노임

구 분	기 존	변 경
소방시설관리사	특급 1명(엔지니어링 노임)	고급 1명(엔지니어링 노임)
보조기술인력	정비원 2명(제조 노임)	초급 2명(엔지니어링 노임)

※ 예산처와 소요예산 사전협의 완료 "예산심의 적정 판정"

Ⅴ 결론 및 건의

❑ 소방설비 법정점검 적기 점검 시행을 위하여, 「Ⅳ.개선 대책」과 같이 회계연도 시작 전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체결으로 발주하고, 용역대가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적용 시행코자 함.

붙임 1. 지방계약법 제23조 및 시행령 76조 1부.
2. 해당 소방법 1부. 끝.